

MINISTRY OF ENVIRONMENT

소음·진동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2023. 2.



환경부

배출시설(공장) 소음·진동 1

1-1 배출허용기준과 규제기준 대상	3
1-2 소음 방지시설 설치	4
1-3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적용 대상	5
1-4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	6
1-5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지역	7
1-6 용도지역 변경 시 소음기준의 유예	8
1-7 자동포장기 소음·진동배출시설 신고 대상 여부	9
1-8 공장 내 에어컨 실외기 소음배출시설 해당 여부	10
1-9 규모 미만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 여부	11
1-10 소음배출시설 동력산정	12
1-11 금속재생업장 소음배출시설 대상 여부	13
1-12 공사장 소음배출시설 대상 여부	14
1-13 소음·진동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여부	15
1-14 소음·진동배출시설 추가 설치 시 변경신고	16
1-15 소음·진동배출시설 권리·의무 승계	17
1-16 소음·진동배출시설 신고주체	18
1-17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19
1-18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선임 및 교육	20
1-19 환경기술인 공동 선임 가능 여부	21
1-20 배출허용기준 측정 시 충격음 보정	22
1-21 소음·진동배출시설 측정지점	23
1-22 공장 배출허용기준 지역구분 적용	24
1-23 소음·진동배출시설 소음도 평가방법	25
1-24 소음·진동배출시설 소음도 측정방법	26

1-25 소음·진동배출시설 소음 측정 주체	27
1-26 개선명령 기간 중 행정처분	28
1-27 무허가 소음·진동배출시설의 폐쇄명령	29
1-28 준공업지역 내 배출시설에 대한 적용기준	30
1-29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측정 범위	31
1-30 행정처분 시 개선명령 이행 판단 기준	32
1-31 소음·진동배출시설 동력 산정방법	33

PART
02

생활소음·진동 35

2-1 공사장	37
2-1-1 환경정책기본법과 「소음·진동관리법」 기준 적용	39
2-1-2 산업단지 내 공사장 소음 규제 가능 여부	40
2-1-3 미철거세대에 대한 생활소음 준수 의무 여부	41
2-1-4 특정장비외 장비 사용시 보정치 적용	42
2-1-5 보정치 적용 가능 여부	43
2-1-6 공사장 소음지속시간 규정 여부	44
2-1-7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여부	45
2-1-8 장비 사용일수의 의미	46
2-1-9 특정공사 변경신고 대상 여부	47
2-1-10 소음규제기준 대상지역 구분	48
2-1-11 생활소음 측정 및 처분 권한자	49
2-1-12 「소음·진동관리법」 상 보호대상	50
2-1-13 지방도에 대한 발파소음기준	51
2-1-14 행정처분 대상자	52

2-1-15 방음벽 설치	53
2-1-16 소음·진동 단속시 민원인 신고 여부	54
2-1-17 공사장 소음 규제기준 및 측정방법	55
2-1-18 소음측정시 공사관계자 입회 관련	56
2-1-19 「소음·진동관리법」 제3조의 상시측정 의미	57
2-1-20 개선명령 기간	58
2-1-21 건축부지 밖 도로상에 있는 레미콘 트럭의 소음기준	59
2-1-22 소음측정기기 설치 관련 조례제정 가능 여부	60
2-1-23 공휴일 발파시 생활소음 기준	61
2-1-24 과태료 및 행정처분 대상 업체	62
2-1-25 「소음·진동관리법」 적용 가능 여부	63
2-1-26 특정공사 사전신고 관련 질의	64
2-1-27 특정장비 사전신고 대상기계·장비 보정치	65
2-1-28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보정치 적용	66
2-1-29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여부	67
2-1-30 대상소음도 산정방법	68
2-1-31 발파소음의 측정방법 및 규제기준	69
2-1-32 소음측정 지점	70
2-1-33 복도형 아파트 소음 측정위치	71
2-1-34 특정공사 사전신고시 작업시간 관련	72
2-1-35 특정장비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변경신고 여부	73
2-1-36 특정공사 변경신고 수리 기간	74
2-1-37 공사장 내 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	75
2-1-38 공사장 측정 가능 여부	76
2-1-39 공사장소음 규제기준 및 행정처분	77

2-1-40	규제대상 소음원 사용금지 명령	78
2-1-41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 사용금지 처분	79
2-1-42	특정공사 대상 기계·장비 사용 시 소음도 보정	80
2-1-43	산업단지 내 공사장 소음	81
2-1-44	공사장 부지 밖 공사차량 소음	82
2-1-45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 사용시간 보정	83
2-1-46	동일 공사장의 시공사 변경에 따른 처분	84
2-1-47	공사장소음 측정지점 선정	85
2-1-48	산업단지 내 공사장소음 규제	86
2-2	사업장	87
2-2-1	사업장 범위	89
2-2-2	생활소음규제대상 여부(다시마 건조기)	90
2-2-3	생활소음규제대상 여부(가정집 내 목재 가공작업)	91
2-2-4	생활소음규제대상 여부(생활폐기물 자동 집하시설)	92
2-2-5	생활소음규제대상 여부(주류 상하차시 발생하는 소음)	93
2-2-6	생활소음규제대상 여부(건설폐기물 처리사업장)	94
2-2-7	생활소음규제대상 여부(조정경기장 모터보트 소음)	95
2-2-8	생활소음규제대상 여부(아파트 내 휘트니스센터)	96
2-2-9	생활소음규제대상 여부(유치원)	97
2-2-10	생활소음규제대상 여부(산단)	98
2-2-11	생활소음규제대상 여부(변전소)	99
2-2-12	생활소음 측정 가능 여부(농지나 과수원에서 일하는 민원인)	100
2-2-13	생활소음 측정 가능 여부(사업장 내 불법점유 민원인)	101
2-2-14	생활소음 측정 시 사업관계자 입회 여부	102
2-2-15	아파트형 공장 실외기 소음 규제	104

2-2-16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장(식당) 실외기 소음 규제대상 여부	105
2-2-17 동일 건물 사업장(슈퍼) 실외기 소음 규제대상 여부 및 소음도 측정위치	106
2-2-18 소음규제기준 초과시 조치사항	107

2-3 확성기	109
2-3-1 개별사업장의 옥외스피커 소음 규제	111
2-3-2 시위행위로 인한 확성기 사용	112
2-3-3 목탁소리 규제 관련	113
2-3-4 확성기소음 기준 및 측정지점	114
2-3-5 「소음·진동관리법」 규제대상 여부	115
2-3-6 후보자 연설 및 홍보를 위한 확성기 사용	116
2-3-7 확성기 소음 신고 가능 여부	117
2-3-8 버스킹 소음 규제	118
2-3-9 집회 확성기 소음 규제	119

2-4 동일 건물 내 소음	121
2-4-1 동일 건물 내 사업장 소음 규제기준	123
2-4-2 동일 건물 사업장 리모델링 공사 소음 규제기준	124
2-4-3 동일 건물 소음·진동 규제기준 대상 여부(볼링장)	125

PART
03

교통소음·진동 127

3-1 도로소음·진동	129
3-1-1 방음벽 설치 의무 및 설치 의무자	131
3-1-2 사후 환경영향평가 시 기준 법령	132

3-1-3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방음·방진시설 설치	133
3-1-4 버스 정류장에 대한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 적용	134
3-1-5 이동차량 소음피해 대책	135
3-1-6 이동차량 확성기 소음 관련 처벌 규정	136
3-1-7 차량 경적소리 규제방안	137
3-1-8 응급차량소음 규제방안	138
3-1-9 다층건물(아파트) 교통소음 측정방법	139
3-2 철도소음·진동	141
3-2-1 철도소음 측정지점 및 합성소음 발생시 적용기준	143
3-2-2 정거장의 의미와 교통소음·진동관리기준 적용 여부	144
3-2-3 공동주택 철도소음 측정위치 및 관련 규정	145
3-2-4 철도소음한도 측정 방법	146
3-2-5 철도소음 측정 시 배경소음 보정	147
3-2-6 철도소음·진동 발생 예상지역 피해 방지 대책	148
3-2-7 철도 선로 장비작업의 교통소음 해당 여부	149

PART
04

항공기소음 151

4-1 공사장 소음측정시 헬기소음 포함 여부	153
4-2 악천후 시 항공기소음 측정 처리방법	154
4-3 항공기소음 측정방법 및 항공기 종류 관련	155
4-4 사업장 내 항공기소음 규제 가능 여부	156

PART
05

행정처분 157

5-1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명령	159
5-2 생활소음규제기준 위반시 개선명령 기간	160
5-3 민원인이 측정한 소음도로 행정처분 가능 여부	161
5-4 소음측정대행기관 측정 시 공무원 입회 여부	162
5-5 소음측정시 담당공무원 입회	163
5-6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기간	164
5-7 행정처분 사전통지 기간 중 민원발생시 처분	165
5-8 '행정처분은 5일 이내에 명하여야 한다'의 의미	166
5-9 행정처분 차수 적용(1)	167
5-10 행정처분 차수 적용(2)	168
5-11 행정처분 차수 적용(3)	169
5-12 시공사 변경에 따른 행정처분 승계 여부	170
5-13 배경소음과 측정소음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 여부	171
5-14 행정처분 명령 위반 시 조치	172

PART
06

충간소음 173

6-1 충간소음의 범위와 기준	175
6-2 충간소음 발생 시 조치방법	176
6-3 충간소음 피해 법적 조치	177
6-4 이웃집 에어컨 실외기 소음피해 조치	178
6-5 이웃집 화장실 소음 규제 가능 여부	179
6-6 사람 목소리에 대한 충간소음 기준 적용 여부	180

6-7 공동주택 공용시설 층간소음 피해 조치	181
6-8 인테리어 리모델링으로 인한 층간소음 피해 조치	182
6-9 체육전용시설 용도건물의 층간소음	183

PART
07

기타 185

7-1 군부대 사격소음 관련	187
7-2 개 짖는 소리 관련	188
7-3 공원 내 축구장 공 소리 소음	189
7-4 공원 내 농구시설 소음	190
7-5 정온시설 및 소음규제기준	191
7-6 수상레저활동 소음 조치	192
7-7 지역구분(도로변 지역)	193
7-8 주차장 경보장치 소음 관련	194
7-9 기도원 실외기 및 배기후드 소음 처분	195
7-10 사람의 대화소리 규제	196
7-11 주차장 환기시설 소음	197
7-12 2층 이상 건물의 생활소음 측정위치	198
7-13 공원 내 편의·운동시설 규제 가능 여부	199
7-14 교회 놀이터 소음 규제	200
7-15 용도지역이 혼재된 경우 기준	201

PART
01

배출시설(공장) 소음·진동

1-1

배출허용기준과 규제기준 대상

Q 질의요지

-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의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인지, 규제기준 적용대상인지 여부?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 기준’은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공장에 적용하는 기준이며,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 외 공장이나 공사장, 사업장 등의 생활소음은 규제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1-2 소음 방지시설 설치

Q 질의요지

- 소음배출시설을 설치한 공장 인근에 거주자가 없는 경우에도 소음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공장의 경우에는 동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다만,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이 새로 설치되거나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분쟁이 발생 할 경우 등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환경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음이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1-3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적용 대상

Q 질의요지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적용 및 제외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규정은 동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적용을 받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토석채취업은 표준산업분류표 상 광업으로 분류되어 소음·진동배출시설 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에 해당 될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가동개시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5>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1-4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

Q 질의요지

- 소음배출시설을 설치한 공장 인근에 거주자가 없는 경우에도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제9조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해당 공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① 주택·상가·학교·병원·종교시설 ② 공장 또는 사업장 ③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등이 없는 경우에는 소음방지시설 설치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위 시설이 새롭게 설치되거나,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5>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1-5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지역

Q 질의요지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지역을 규정하고 있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50m가 공동주택 부지경계선에서 공장의 부지경계선까지인지, 배출시설이 설치된 곳까지인지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장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는 소음·진동배출시설 발생소음만이 아닌 공장 전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음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지역을 규정한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제1항 단서조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 시설의 부지경계선에서 50m 이내인 지역이 의미하는 산정기준은 보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 시설의 부지경계선에서 공장의 부지경계선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1-6

용도지역 변경 시 소음기준의 유예

Q 질의요지

-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을 경우 소음기준의 유예나 제외기준은 없는지?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지역(용도지역·용도지구)의 구분에 따라 적용합니다.
 -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적용 유예 또는 제외 조문이 없는 한, 변경된 용도지역에 맞게 소음기준이 적용됩니다.

1-7

자동포장기 소음·진동배출시설 신고 대상 여부

Q 질의요지

- 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인 자동포장기의 범위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공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따라서 상기 공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공장에 해당될 경우 2대 이상의 자동포장기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라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대상입니다. 이때 자동포장기는 음식료품 등 생산제품을 캔, 팩, 병, 포대 등에 주입(충전)한 후 압축공기 또는 기계력을 이용하여 자동포장(밀봉·타전)하는 기계를 의미합니다.
- 다만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계·기구 및 시설 등의 음향파워레벨이 실내에 설치된 경우로서 87dB(A) 이하거나 실외에 설치된 경우로서 77dB(A) 이하인 경우 사업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법 비교에 따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음배출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1-8

공장 내 에어컨 실외기 소음배출시설 해당 여부

 질의요지

- 공장에서 사용하는 에어컨 실외기를 압축기와 송풍기로 보아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답변

- 공장에서 사용하는 에어컨 실외기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배출 시설(압축기·송풍기)에 해당하는 설치신고 대상 동력규모 이상일 경우 소음배출시설로 보아 설치신고(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9

규모 미만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 여부

Q 질의요지

- 2.25kW 단조기가 2대, 1.5kW 단조기가 2대 있는 경우 7.5kW 단조기로 보아 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 해당 여부 문의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가목의 소음배출시설은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 한해 규모 미만의 배출시설 동력 합계가 37.5kW 이상일 경우 소음·진동배출시설로 분류됨을 알려드립니다.

1-10

소음배출시설 동력산정

질의요지

- 성형기가 전기(가열시설), 압축기, 진공펌프의 동력을 연결해서 사용할 때, 연결된 기계의 모든 동력을 합산해서 성형기 동력을 산정해야 하는지?
- 나사식 압축기의 주모터가 37kW, 냉각모터가 1.6kW일 경우 압축기 동력을 합산해서 산정해야 하는지?

답변

- 성형기에 연결된 압축기와 진공펌프는 별개의 시설로 보아야 하며, 성형기 자체 동력원의 크기를 확인하여 소음배출시설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성형기에 연결된 압축기와 진공펌프도 동력을 확인하여 소음배출시설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나사식 압축기 동력의 산정은 주동력의 크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합산한 두 개의 모터동력이 아닌 주모터의 크기인 37kW를 압축기의 동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1-11

금속재생업장 소음배출시설 대상 여부

Q 질의요지

- 금속재생업장에서 압축기 150kW, 금속절단기 450kW 설치시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필요 여부 문의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규정은 동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적용을 받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속원료재생업(38301)만 영위하는 사업장이라면, 소음·진동배출시설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12

공사장 소음배출시설 대상 여부



질의요지

- 공사장에서 37.5kW 이상 혼합기 사용 시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 해당 여부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규정은 동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적용을 받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에 적용되며, 공사장은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공사장의 경우 혼합기 소음을 포함한 전체 사업장 소음이 생활소음·진동 규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소음·진동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여부

Q 질의요지

- 1개의 본사와 개별사업장이 각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다가 개별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폐쇄하고 본사 사업자등록증으로 통합시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 여부 문의

A 답변

- 상기와 같은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가 변경된다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14

소음·진동배출시설 추가 설치 시 변경신고

Q



질의요지

- 동력 기준 소음배출시설을 신고하였는데, 대수기준인 시설이 추가 설치될 경우 변경 신고 대상 여부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배출시설의 규모가 100분의 50 이상 증설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배출시설의 규모는 동력 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등 총 동력의 합계,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기구는 총 대수의 합계, 기타 시설 및 기계·기구는 각각의 단위의 합계로 합니다.
 - 하나의 사업장에 마력기준, 대수기준, 기타시설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설 비율에 따라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15

소음·진동배출시설 권리·의무 승계

Q 질의요지

- 소음배출시설을 양도·양수하였을 경우 신규로 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A 답변

-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권리·의무승계 신고대상입니다.

1-16 소음·진동배출시설 신고주체

질의요지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완료한 타사의 공장동을 임차하여 법인설립 등 공장등록을 할 경우 소음·진동배출시설 신고주체 문의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배출시설 임차인은 제14~16조, 제17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 및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와 기준위반 시 개선명령 이행 등의 의무를 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17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Q 질의요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중 비고4호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는 해당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여야 한다”에서 “상시근무”의 의미와 겸임 가능 여부

A 답변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상시근무”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영업시간 내 근무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임명된 환경기술인이 상시근무를 할 경우 겸임이 가능합니다.
- 다만 「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의 환경기술인 임명 의무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에 의해 자율규정으로 작용하며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공장에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18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선임 및 교육

Q



질의요지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을 채용·고용·임명·지정 또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소음환경기술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A



답변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음·진동 환경기술인은 채용·고용·임명·지정 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채용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장의 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해당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교육은 귀하의 사업장에서 지정한 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19 환경기술인 공동 선임 가능 여부

Q 질의요지

- 대표자가 동일한 3개의 공장에 대하여 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를 각각 하였을 경우 환경기술인 공동선임 가능 여부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라 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공장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합니다.(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따라서 대표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를 각각 하였다면, 환경기술인을 각각 선임하여야 합니다.
- 더불어, 임명된 환경기술인은 해당 사업장에 상시 근무해야 하며, 환경기술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20

배출허용기준 측정 시 충격음 보정

Q



질의요지

- 공장에서 가동 중인 프레스의 소음 측정결과에 충격음에 대한 보정을 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및 충격음의 정의에 대한 질의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와 관련한 <별표5>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의 비고4호에 따라 충격음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기준치에 -5dB를 보정함에 따라 대상소음도에 보정치를 보정한 후 산출된 평가소음도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또한,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의 총칙(소음)에서 ‘충격음은 폭발음, 타격음과 같이 극히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는 높은 세기의 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1

소음·진동배출시설 측정지점

Q 질의요지

- 사업장 부지경계가 사업장보다 낮은 지대에 위치하여 부지경계에서의 소음도가 더 낮은 경우, 배출허용기준 측정지점 문의

A 답변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은 공장의 부지경계선 중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로서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 이때, 부지경계선이란 소음피해를 받는 자에게 가장 가까운 부지(건물+토지)의 경계를 의미하며, 공장의 부지경계선이란 공장부지의 외부경계선이 가장 유사한 측정지점입니다.
- 그러나, 공장의 부지경계선이 불명확하거나 공장의 부지경계선에 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에서의 소음도가 더 큰 경우에는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함을 알려드립니다.

1-22

공장 배출허용기준 지역구분 적용

Q

 질의요지

- 소음발생 공장과 피해를 받는 민원인의 거주지 간 지역구분이 다른 경우 배출허용기준 문의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공장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표5>의 비고3에 따라 해당 공장이 입지한 지역의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합니다.
- 다만,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외)에 위치한 공장으로서 해당 공장 200m 이내에 <별표5> 제1호 가목의 대상지역이 위치한 경우에는 가목의 허용기준을 적용합니다.

1-23

소음·진동배출시설 소음도 평가방법

Q 질의요지

- 배출시설 설치공장의 소음측정시 공장 출입차량과 도로통행차량 소음으로 인해 소음도가 높아질 경우, 소음도 평가방법 문의

A 답변

- 질의 내용의 공장 출입차량과 도로통행차량 소음은 배경 소음도로 볼 수 있으며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에 따라 배경소음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보정치를 적용하여 평가하며, 신뢰성 있는 측정을 위하여 배출시설의 측정소음도는 배경소음의 영향 및 변화가능성이 적은 시간대를 택하여 측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4

소음·진동배출시설 소음도 측정방법

질의요지

- 공정시험방법 중 배출시설의 최대출력상태에서 측정해야한다고 했는데, 이때 공장의 기타소음이 없는 상태에서 배출시설만 가동한 후 측정해야하는지?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에서 배출시설이 있는 공장의 소음을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배출시설뿐 아니라 공장 전체의 소음을 측정해야 하며 배경소음은 공장이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되어야 합니다.

1-25

소음·진동배출시설 소음 측정 주체

Q 질의요지

- 민원인이 직접 측정하고 촬영한 정보를 근거로 행정처분 가능 여부
- 소음·진동배출시설 소음 측정 주체 및 입회 규정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은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해서 배출허용기준과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과 진동 검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규제 및 행정처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담당공무원(혹은 위탁한 공인기관)이 측정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소음측정을 하여 제출한 자료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 아울러,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입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 자료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26 개선명령 기간 중 행정처분

Q 질의요지

- 개선명령에 따라 시설 변경 중인 공장에 대하여, 소음을 측정한 후 소음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처분이 가능한지?

A 답변

- 개선명령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는 가동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음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관할지자체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 시설의 변경 등을 하는 중에는 소음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1-27

무허가 소음·진동배출시설의 폐쇄명령

Q 질의요지

- 무허가 소음·진동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을 실시하였으나, 해당 시설이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조치방법

A 답변

- 무허가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소음·진동관리법」 제18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미이행하였을 경우, 같은 법 제18조 및 제57조제1호에 따라 ‘폐쇄명령’ 및 ‘고발’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계속적인 폐쇄명령 불이행으로 공공의 이익에 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8

준공업지역 내 배출시설에 대한 적용기준

Q



질의요지

- 준공업지역 내 배출시설이 있는 공장과 없는 공장의 경우 배출허용기준과 생활소음 규제기준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A



답변

-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위한 사업장중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소음·진동배출시설을 갖추고 같은 법 제8조의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 대상인 공장의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의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며, 시행규칙 <별표1>의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인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8>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1-29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측정 범위

Q 질의요지

-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내에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소음 등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제1항에서는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한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진동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공장의 특정 배출시설의 소리만을 규제하는 것이 아닌 공장 전체에 대한 소음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장부지 내에서 지속적으로 배출시설 가동공정과 연계되어 작업되는 배출 시설 외 기계·장비의 소음은 배출시설 소음과 동시에 측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0

행정처분 시 개선명령 이행 판단 기준

Q 질의요지

- 공장의 소음·진동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1차 개선명령을 받아 개선명령의 기간이 종료되어 이행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개선완료 상태를 확인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별표21>에서,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보아 제2호 가목 1)을 적용하여 2차 개선명령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 제15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제2호 가목 7)가)를 적용하여 조업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인지? 또한, 소음·진동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A 답변

-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 판단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공장에서 제출한 이행보고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배출시설에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소음·진동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면 2차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1

소음·진동배출시설 동력 산정방법

Q 질의요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소음배출시설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기계의 동력을 확인해야하는데, 배출시설 기계제원이 훼손되는 등의 사유로 증서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객관적인 동력 측정방법 문의

A 답변

- 기계제원이 훼손된 소음배출시설의 동력은 해당 기계의 모델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기계 모델번호 정보로 동력 확인이 불가할 때는 해당 기계의 동력원(전동모터 등)을 찾아 동력원에 기재되어있는 동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ART
02

생활소음·진동

2-1 공사장	37
2-2 사업장	87
2-3 확성기	109
2-4 동일 건물 내 소음	121

2-1 공사장

2-1-1

환경정책기본법과 「소음·진동관리법」 기준 적용

Q 질의요지

- 민원발생시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환경기준과 「소음·진동관리법」의 생활소음규제 기준 중 적용하는 기준은?

A 답변

-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환경소음기준이란 환경정책의 목표치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으며, 「소음·진동관리법」 상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환경소음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수단의 하나로서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생활소음 규제기준에서는 소음발생원(공장, 공사장, 사업장, 확성기 등) 및 대상지역, 시간대로 구분하여 기준치를 달리 규정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2-1-2 산업단지 내 공사장 소음 규제 가능 여부

Q 질의요지

- 민원인 소재지의 대상지역은 주거지역이며, 공사장이 위치한 대상지역은 산업단지인 경우 생활소음 규제대상인지?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는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및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관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공사장이 위치한 대상지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인 경우 생활소음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은 적용됩니다.

2-1-3 미철거세대에 대한 생활소음 준수 의무 여부

Q 질의요지

- 재개발지구 공사장 부지 내 미이주 주민의 소음 민원에 대하여 생활소음 규제기준 적용 여부

A 답변

- 공사장은 「소음·진동관리법」의 적용대상이나 피해자의 위치가 재개발지구 내인 경우 피해자와 공사장의 경계구분이 모호한 바, 관할 구청과 소음피해의 저감 및 안전상의 조치에 대하여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재개발지구 내 거주자가 퇴거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거주권을 상실하였다면 불법점유상태로 「소음·진동관리법」의 적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2-1-4 특정장비외 장비 사용시 보정치 적용

Q 질의요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비고4 보정치 적용 관련하여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가 아닌 지게차 등 기타 장비 소음이 더 큰 경우 보정치 적용 가능한지?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비고4에 따른 보정치 적용시 지게차 등 기타 장비 소음이 더 크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9>에서 정하는 특정공사 사전 신고 대상 기계·장비들을 사용하였다면 보정치 적용이 가능합니다.

2-1-5 보정치 적용 가능 여부

Q 질의요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비고4에서는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 공사장에서 사전 계획되지 않은 시간에 대해 당일 작성한 작업일지를 근거로 보정치 적용을 요구하는 경우 보정치 적용이 가능한지?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비고4에 따른 보정치 적용은 사전신고 된 특정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전 계획된 작업시간 외 특정장비를 사용한 경우라면 보정치 적용은 어렵습니다.

2-1-6 공사장 소음지속시간 규정 여부

Q 질의요지

- 「소음·진동관리법」에서 공사장 소음 지속시간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는지?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상 공사장 소음의 지속시간 등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 ES 03303.1의 7.0에 따라 생활 소음의 측정소음도 또는 배경소음도는 5분 이상 측정하여 등가소음도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공사장 소음에 한하여 발생시간이 5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시간 동안 측정·기록하되 최소 2분 이상 측정하여야 합니다.

2-1-7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여부

Q 질의요지

- 면적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지조성, 농지정리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공사 또는 정지공사에 해당하는지?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토공사·정지공사 등 공사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토공사는 부지정리, 지반의 틈 정리, 구덩이 파기, 땅고르기 등의 공사를 포함하며, 정지공사는 흙파기 공사 등을 의미합니다.
-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가 부지정리, 지반의 틈정리, 땅 고르기, 흙파기 공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해당 공사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토공사, 정지공사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는 지자체가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2-1-8 장비 사용일수의 의미

Q 질의요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규정된 ‘특정공사’의 정의 중 “〈별표9〉의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에서 5일 이상의 의미는?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별표9〉의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란 총 공사기간 내 특정공사 대상 기계·장비를 투입일수 기준으로 5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1-9 특정공사 변경신고 대상 여부

Q 질의요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제1호의 변경신고 사항 중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30% 이상의 증가의 의미는?
- 또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작업개시 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처분이 가능한지?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제1호의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30% 이상의 증가’는 전체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총 대수 또는 기계·장비 종류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따른 공사 기간 및 사용 시간 등이 변경되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제2호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임을 안내드립니다.

2-1-10 소음규제기준 대상지역 구분

질의요지

-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공사장 인근 일반상업지역에 주상복합건물이 있는 경우 소음 규제기준 문의(주거지역/그 밖의 지역)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대상지역은 민원인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며, 대상지역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민원인의 위치의(주상복합건물) 지역구분이 일반상업지역인 경우에는 <별표8>의 그 밖의 지역기준을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2-1-11 생활소음 측정 및 처분 권한자

Q 질의요지

- 골프장 공사장에서 발파작업을 위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경우이며, 공사장 발파시 측정대행업체에서 소음·진동을 측정하여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할 수 있는지?

A 답변

- 생활소음의 측정은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시·군·구 공무원 또는 해당 공무원이 위탁한 공인기관이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값이 생활소음규제기준 위반시 행정처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1-12 「소음·진동관리법」 상 보호대상

Q 질의요지

- 공사장 인근에서 거주민(가옥)이 별도의 측사 없이 오리를 방사하여 사육하는데, 공사장 소음으로 가축이 피해를 보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규제가 가능한지?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생활소음·진동을 관리하는 목적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것으로 가축은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환경분쟁피해배상액산정기준’ 등을 정하여 환경피해 분쟁 발생시 가축피해에 대한 인정기준 및 배상액을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13 지방도에 대한 발파소음기준

Q 질의요지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9조의 ‘제4종 보안물건’ 중 지방도에 대한 발파소음 기준 문의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제21조에 따라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도로 공사의 발파작업에 대해서는 공사장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생활소음규제기준은 대상지역, 시간대에 따라 구분하여 기준치를 달리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1-14 행정처분 대상자

Q 질의요지

- 특정공사장에서 발파소음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자 문의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한 원도급자/경찰서에서 화약사용 허가를 받은 발파업체)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신고 의무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원도급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하도급 계약에 의해 하도급업자가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였더라도, 「소음·진동관리법」 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은 신고자(원도급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15 방음벽 설치

Q 질의요지

- 주거지 인근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장의 방음벽 설치 요청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0>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사장에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별표8>의 생활소음규제 기준 초과한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작업시간의 조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2-1-16 소음·진동 단속시 민원인 신고 여부

Q 질의요지

- 공사장 소음·진동 단속을 꼭 민원인이 신고하여야 단속이 가능한지 여부와 이른 아침 시간 등 공무원이 출근하기 전에 단속 주체 문의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은 주민에 대한 소음·진동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음·진동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생활소음관리기준 위반 여부의 확인은 「소음·진동공정 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ES 03303.1c)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 경계선에서 측정하므로, 민원을 통한 피해자가 있어야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소음·진동에 대한 관리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써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으며, 이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 방식은 각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17 공사장 소음 규제기준 및 측정방법

Q 질의요지

- 주거지역 공사장 소음규제기준 및 측정방법(장비 가동 여부) 문의

A 답변

- 공사장 소음의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라 피해자의 대상지역 및 시간대별로 관리기준을 구별하고 있으며, 주거지역의 경우 아침 및 저녁(05:00~07:00, 18:00~22:00)에 60dB 이하, 주간(07:00~18:00)에 65dB 이하, 야간(22:00~05:00)에 50dB 이하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별표8>의 비고4, 5, 7의 해당 여부에 따라 보정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 중 생활소음 측정 방법(ES 03303.1)에 따라 대상소음원(공사장비 등)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킨 상태에서 측정소음도를 측정하고 대상소음원의 가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배경소음을 측정함을 알려드립니다.

2-1-18 소음측정시 공사관계자 입회 관련

Q 질의요지

- 공사관계자의 입회 없이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제47조에 따라 관련 공무원이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맞게 소음을 측정하였을 경우, 공사관계자의 입회와 상관없이 측정이 가능합니다.
- 다만, 배경소음도 측정 및 행정처분 절차의 원활한 수행 등의 사유로 관계자를 입회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2-1-19 「소음·진동관리법」 제3조의 상시측정 의미

Q 질의요지

- 「소음·진동관리법」 제3조의 상시측정은 무엇을 어떻게 측정하는 것인지 문의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제3조에 따라 전국적인 소음·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경소음측정망(1,766개 지점), 항공기소음자동측정망(90개 지점), 철도소음측정망(41개 지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국가소음 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20 개선명령 기간

Q 질의요지

- 공사장 소음기준 초과로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지자체별로 조치 기한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바, 기준이 있는지?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상 공사장이 생활소음 규제기준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 개선명령 기간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관할 지자체는 소음초과 원인 및 공사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치명령 대상을 정하며, 이에 따라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2-1-21 건축부지 밖 도로상에 있는 레미콘 트럭의 소음기준

Q 질의요지

- 공사장 부지 협소로 건축부지 밖의 도로상에 레미콘 트럭 및 펌프차를 정차시키고 공사를 하는 경우 생활소음규제기준(공사장)을 적용 가능한지?
- 적용이 가능하다면 행정처분기준 중 어느 항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A 답변

- 공사장 부지가 협소하여 건축부지 밖 도로에 레미콘 트럭 및 펌프차를 정차하고 공사를 한다면 공사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생활소음규제기준(공사장)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경우 “도로점용 허가” 등을 득하고, 작업시간 조정, 이동식 방음시설 등 설치, 저소음 건설기기 사용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2-1-22 소음측정기기 설치 관련 조례제정 가능 여부

Q 질의요지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의2(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에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의2(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규정은 공사장 소음으로부터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 내에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며, 따라서 자치단체장은 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2-1-23 공휴일 발파시 생활소음 기준

Q 질의요지

- 주거지역에서 공휴일 주간에 발파작업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비교의 보정치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주거지역의 경우 공사장 주간의 규제기준은 65dB이며, 비교5에서 공사장 기준에 발파소음은 주간에 +10dB를 보정해야 하므로 규제기준은 75dB이나, 비교7에 의해 공사장 규제기준은 공휴일에 -5dB를 보정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주거지역에서 공휴일 주간 발파작업의 규제기준은 70dB입니다.

2-1-24 과태료 및 행정처분 대상 업체

Q 질의요지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의 시공사가 골재공사 완료 후 발주자와의 분쟁이 생겨 공사장에서 철수하고, 이후 설비·인테리어 공사업체가 설비·인테리어 공사(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이 아님)를 하는 도중 발생한 소음이 규제기준을 초과하였음
 - 이때 과태료 및 행정처분은 어느 업체에 해야 하는지?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상 규제대상은 행위자이므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가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시 해당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및 행정처분 하여야 합니다.

2-1-25 「소음·진동관리법」 적용 가능 여부

Q 질의요지

- 철도통행 및 화물열차 조성 작업이 이루어지는 지하철 역사 소음에 대해 입주전(현재 공사중)인 공동주택에서 민원을 제기할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적용기준 문의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은 소음 적정관리 및 피해방지를 통해 거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바, 아직 존재하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한 「소음·진동관리법」의 적용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동주택 건설시 시공사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실외소음도기준 65dB 및 실내소음도기준 45dB을 고려하여 시공할 의무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26 특정공사 사전신고 관련 질의

Q 질의요지

- 당초 특정장비 사용일수가 3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5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인지?
- 이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시점은?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장에서 특정장비(시행규칙 <별표 9>))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착공 전에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 당초 공사일이 3일로 예정되었으나,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일인 5일 이상 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사전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이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는 특정장비를 5일 이상 사용을 확인(인지)하는 시점에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1-27 특정장비 사전신고 대상기계·장비 보정치

Q 질의요지

- 특정장비 사전신고 대상기계·장비 사용 작업시간에 대한 소음규제기준 보정치 적용 대상문의
 - 특정장비 사용에만 적용 / 특정장비외 인부작업(망치질 및 철근절단 등)도 포함하여 적용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비고4에 따른 보정치는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을 관할기관에 증명할 수 있을 때 적용가능하며 해당 특정장비를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망치질 소리를 포함한 공사장 작업소음에 대해 보정치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1-28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보정치 적용

Q 질의요지

- 지하철 공사를 위해 전체 공사 구간 약 3km 내에 6곳의 작업장에서 부분적으로 터널을 뚫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거리를 두고 이루어지는 공사이더라도 하나의 공사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각각의 작업장(6곳)에 대한 특정공사 신고는 반드시 1건으로만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작업장별로 각각 특정공사 신고를 할 수 있는지?
- 법적 기준치 이내에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특정공사 신고시 소음발생 기계의 사용 시간을 3시간으로 변경하여 보정치를 적용받고자 하는데, 6곳의 작업장을 별개로 특정공사 시간대를 설정하여 신고 가능한지?

A 답변

- 동일한 시공사가 동일한 공사를 할 경우에 공사장 전체에 대하여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각 공사 구간의 소음 규제기준에 대한 보정은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적용하여야 합니다.

2-1-29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여부

Q 질의요지

- 100마력의 이동식 채석기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에 해당하는지?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에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9>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동식 채석기는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1-30 대상소음도 산정방법

Q 질의요지

- 아래 공사장의 경우 측정소음도, 배경소음도, 대상소음도 문의
 - 측정소음도 : 1차(73.5dB), 2차(72.1dB), 3차(72.7dB)
 - 배경소음도 : 64.1dB의 경우

A 답변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의 측정자료 분석 및 배경소음 보정방법에 따라 측정소음도 및 배경소음도를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각각 반올림후 그 차이로 보정값을 구하며, 측정소음도와 배경소음도의 차이에 따라 보정치를 적용하여 평가소음도를 구합니다.
 - 상기의 경우 측정소음도는 73.5dB→74dB, 배경소음도 64.1dB→64dB이며 측정소음도와 배경소음도의 차이는 10dB이므로 배경소음의 영향이 극히 작기 때문에 보정값을 적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1-31 발파소음의 측정방법 및 규제기준

Q 질의요지

- 발파소음의 측정 및 평가 방법
- 발파소음의 생활소음규제기준 문의

A 답변

- 발파소음의 측정 및 평가방법은 배경소음도와 측정소음도의 차이에 따른 보정치를 적용한 대상소음도에 시간대별 보정발파횟수(N)에 따른 보정을 하며, 자세한 사항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 중 발파소음 측정방법 (ES 03303.2b)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라, 공사장에 대한 생활소음규제기준은 대상지역(민원인의 위치)에 따라 주간(07:00~18:00) 65dB 이하 또는 70dB 이하이며 발파소음의 경우 비교5에 따라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dB 보정치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2-1-32 소음측정 지점

Q 질의요지

- 사업장 인근 공사장 소음에 대해 사업장 옥상에서 측정가능 여부 문의

A 답변

- 공사장 소음측정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 생활 소음의 측정방법(ES 03303.1c)에 따라, 측정점은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1.5m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등으로서 피해가 우려되는 자의 부지경계선에 비하여 소음도가 더 큰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높은 곳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1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소음·진동관리법」은 주민 등 지속적인 소음피해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옥상에 주거시설 또는 사무실 등이 있어 지속적인 소음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아닌, 옥상에서의 소음측정은 적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1-33 복도형 아파트 소음 측정위치

Q 질의요지

- 공사장 소음측정시 복도식 아파트 복도(외벽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음)의 측정점은?

A 답변

- 생활소음 측정지점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의 '규제기준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 5.1 측정점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창문, 출입문, 건물벽 밖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0.5~1.0m 떨어진 곳에서 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도로소음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지점이 복도식 아파트의 복도 쪽 출입문이라면, 출입문 복도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0.5~1.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야 합니다.

2-1-34 특정공사 사전신고시 작업시간 관련

Q 질의요지

-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의 공사실시기간 및 특정장비의 사용기간에 기재된 시간외 작업(특정기계 장비 사용이 아닌 철근공 및 형틀공 작업) 가능 여부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는 당해 공사장이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정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때, 제출한 신고사항은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 시간에 관한 변경신고를 미이행할 경우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처분이 가능합니다.

2-1-35 특정장비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변경신고 여부

Q 질의요지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한 자가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중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란에 기재된 특정장비 사용시간 외의 시간에 특정장비를 추가적으로 사용한 경우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해야 합니다.
-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별지 제10호〉 서식) 중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란에는 실제 작업일수와 함께 작업개시 시와 작업종료 시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사전신고된 특정장비 사용시간이 연장되는 경우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2-1-36 특정공사 변경신고 수리 기간

Q 질의요지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제3항에서는 관할 관청은 변경신고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데 혹시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 내에 공휴일이 포함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에서는 특정공사 사전신고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할 지자체로 변경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해당 처리기간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고 처리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직후 근무일)까지 처리하면 됩니다.
- ※ (참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리기간이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1-37 공사장 내 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

Q 질의요지

- 공사장에서 50마력 이상 혼합기 사용 시 배출시설설치신고 대상 해당 여부 문의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에 적용되며 공사장은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상기의 경우 혼합기 소음을 포함한 전체 공사장 소음이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1-38 공사장 측정 가능 여부

질의요지

- 공사장 내 설치된 풍속계가 5%를 초과할 경우 생활소음 측정이 가능한지?

답변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의 생활소음 측정방법 5.2 측정조건에 따라 풍속이 5%를 초과할 때에는 소음측정이 어렵습니다.
- 공사장 내 풍속이 아닌 소음 측정지점의 풍속을 기준으로 5%를 초과하는 경우 소음을 측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2-1-39 공사장소음 규제기준 및 행정처분

Q 질의요지

- 시공사가 소음기준을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주간은 물론 특히 심야, 아침, 저녁 시간대 공사 등으로 인해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생활불편 민원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
-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건축, 토목 등 개발 관련 공사시간을 제한하는 법률개정이 근본적인 민원해소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별표8>에서는 공사장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시간대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고,
 - 주거지역의 경우 아침·저녁(05:00~07:00, 18:00~22:00) 60dB(A) 이하, 주간(07:00~18:00) 65dB(A) 이하, 야간(22:00~05:00) 50dB(A) 이하
- 공휴일의 경우에는 -5dB(A)를 추가로 보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에 의거 규제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40 규제대상 소음원 사용금지 명령

Q 질의요지

- 특정공사 사전신고 된 공사장에서 1년 이내에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4차 초과하여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 및 소음발생행위 중지명령 처분을 받음
- 해당 지자체는 처분에 대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공사장 소음측정을 실시함
 - 이때, 공사장은 소음발생행위 중지명령에 대한 이행은 완료하였으나, 당일 발파 작업을 하여 발파소음에 따른 보정치를 적용한 규제기준 75dB를 초과함
- 위 위반사항이 고발대상인지 여부와,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이 가능한 지 여부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별표21> 참고1에 따라 행정처분기간 중에는 규제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4항에 의거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사항은 조치명령에 대한 이행은 완료 하였으나, 규제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 추후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 명령 위반시에는 같은 법 제57조(벌칙) 제4호의 법규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1-41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 사용금지 처분

Q 질의요지

- 공사장에서 특정공사 신고대상 기계·장비 소음이 아닌 발파소음으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4차 위반한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 행정처분기준 중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명령’이 가능한지 여부
-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명령’시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계·장비에 대해 사용금지가 가능한지, 아니면 특정공사 신고대상 기계·장비에 대해서만 사용 금지가 가능한지 여부
 - 이때, 사용중지 명령기간은?

A 답변

- 공사장 발파소음은 공사장 소음의 일부이며, 이로 인하여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 최근 1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가중된 처분이 가능하며, 이전 같은 위반행위로 3차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4차 처분에 따른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명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에서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명령’이란 공사장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금지’를 말합니다.
 - 이때 처분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므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기간을 부여 하시면 됩니다.

2-1-42 특정공사 대상 기계·장비 사용 시 소음도 보정

Q 질의요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별표8> 비교4에 따르면, 특정공사 대상 기계·장비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10dB,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를 규제기준치에 보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음측정 당일 특정공사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지 않았을 시에도 보정 가능한지?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비교4에 따른 보정치 적용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했을 때 그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보정 가능합니다.
- 그러므로 특정공사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1-43 산업단지 내 공사장 소음

Q 질의요지

- 공사장의 위치가 산업단지 내 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민원피해자가 산업단지 내 주거지역일 경우 피해자 기준으로 공사장이 생활소음·진동 규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생활소음 규제대상에 포함된다면,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또한, 「소음·진동관리법」 제49조 및 시행규칙 제73조(행정처분기준) 관련 <별표21> 생활 소음·진동의 규제와 관련한 행정처분기준에서의 ‘공사중지명령 범위’와 ‘공사 중지명령은 제21조 특정공사에 한정한다’라고 하였는데, 특정공사가 아니라면, 행정처분 미이행시 행정처분기준 차수 적용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A 답변

- 공사장의 위치가 산업단지 내 공업지역일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생활소음 규제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그러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공사중지명령’은 공사전체의 중지를 의미하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이 아닌 공사장에는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 명령’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44 공사장 부지 밖 공사차량 소음

Q 질의요지

- 공사장 부지 협소로 건축부지 밖의 도로상에 레미콘 트럭 및 펌프차를 정차시키고 공사를 하는 경우 생활소음규제기준(공사장)을 적용 가능한지?
- 적용이 가능하다면 행정처분기준 중 어느 항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A 답변

- 공사장 부지가 협소하여 건축부지 밖 도로에 레미콘 트럭 및 펌프차를 정차하고 공사를 한다면 공사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생활소음규제기준(공사장)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경우 “도로점용 허가” 등을 득하고, 작업시간 조정, 이동식 방음시설 등 설치, 저소음 건설기기 사용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2-1-45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 사용시간 보정

Q 질의요지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 사용 시간에 대한 보정치 적용 여부 문의
 - 특정장비 여러 대를 사용시 최대 소음발생 장비만 6시간 이하로 가동한 경우
 - 평소 작업시간(8시간)과 소음측정일(6시간)의 특정장비 사용시간이 다른 경우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비고4에 따른 보정치 적용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전체 사용시간에 따라 적용되며, 특정공사 사전신고 내용, 작업일지 등 작업시간 준수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때에만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1-46 동일 공사장의 시공사 변경에 따른 처분

Q 질의요지

- 동일 공사현장에서 시공사 A가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6회 초과하여 행정처분 받은 상태에서 시공사 B로 변경됨
 - 이때, 시공사 B가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1차 처분 인지 아니면 7차 처분인지?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상 생활소음·진동 규제대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에 대한 별도의 승계규정이 없는바, 기존의 시공사가 받은 행정처분의 이행은 기존 공사장이 이행완료로 하여야 하며, 시공사 변경 후에는 변경된 시공사가 행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1-47 공사장소음 측정지점 선정

Q 질의요지

- 상가건물(총 4층) 중 1층 상가만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인 A씨가 인접부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소음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던 중, 구청에 공사소음 민원을 제기하여 소음측정을 하였음
- 소음측정점은 A씨의 주장에 따라 A씨의 사무실(1층)과 관련이 없는 동일 건물 4층(현재 공실이며, 건물주는 A씨와 임대차 사실이 없음)을 선정하였으며, 소음측정을 실시한 결과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였음
- A씨의 주장에 따라 A씨가 거주·사용하지 않고 있는 동일 건물 4층(현재 공실)에서 측정한 결과가 생활소음을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 민원인 A씨의 요구에 따른 측정지점 선정이 적합한지?

A 답변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 5.1.1에서 측정점은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이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에 소음도가 더 높은 곳(2층 이상)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의 경우 민원인의 거주공간이 1층이므로 측정지점은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2-1-48 산업단지 내 공사장소음 규제

질의요지

-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산업단지로 조성중인 공사장은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의거 소음·진동배출시설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생활소음·진동에도 제외됨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산업단지(산업단지 중 주거 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민원은 우선 산업단지 관리주체와 업무협조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2-2 사업장

2-2-1 사업장 범위

Q 질의요지

- 「소음·진동관리법」 상 사업장의 범위 문의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 사업장이란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으로 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 또는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면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2-2-2 생활소음규제대상 여부(다시마 건조기)

질의요지

- 어촌에서 소규모 건조기를 사용하여 다시마를 건조하여 일부는 자가소비하고 일부는 판매할 경우 생활소음규제대상 해당 여부 문의(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으며 생산·판매 사업장 없음)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은 주로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 등에 대하여 적용되며 상기의 경우 판매장소가 없는 점, 사업자 등록 여부, 자가소비를 하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영리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사업장으로 보기는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2-2-3

생활소음규제대상 여부(가정집 내 목재 가공작업)



질의요지

- 사업장등록이 안된 가정집에서 목재 가공(조각하여 무료배포 또는 판매)시 발생하는 전기톱 및 연마기(그라인더) 소음 규제가능 여부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일반가정집에서 일시적으로 목재가공을 위해 사용되는 전기톱, 연마기 등의 발생소음을 생활소음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2-4

생활소음규제대상 여부(생활폐기물 자동 집하시설)

Q 질의요지

- 도로변 또는 아파트 단지 내의 생활폐기물 자동 집하시설의 「소음·진동관리법」 대상 여부 문의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은 주로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 등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상기 시설이 별도의 사업자가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생활소음규제 대상에 해당될 것이나 단지 아파트 주민의 편의를 위한 무료시설인 경우에는 생활소음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상기시설의 설치 공사시에는 생활소음규제기준 중 공사장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정확한 법 적용 해당 여부는 관할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5 생활소음규제대상 여부(주류 상하차시 발생하는 소음)

Q 질의요지

- 아파트 옆 주류유통업장에서 주류를 상하차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소음측정 및 규제가능 여부 문의

A 답변

- 사업장의 영업을 위하여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실시되는 상하차작업은 생활소음(사업장) 규제기준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음측정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2-6

생활소음규제대상 여부(건설폐기물 처리사업장)

Q 질의요지

-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장의 소음규제기준 문의(배출허용기준/생활소음규제기준)
- 배경소음 및 작업시간에 따른 보정 여부 문의
-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장에 대한 규제기준 완화 건의

A 답변

-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의 공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사업장 기준을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에서는 측정소음도와 배경소음도의 차이(3~9dB(A))에 따라 보정하여 배경소음을 배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음·진동관리법」은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소음규제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의 용도를 고려하여 규제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며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시 민원인의 위치, 발생소음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방음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2-7

생활소음규제대상 여부(조정경기장 모터보트 소음)

Q 질의요지

- 경기도 하남시 조정경기장의 모터보트 소음을 사업장 생활소음으로 보아 관리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측정방법 및 발생 소음원의 적용 기준은?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4호의 사업장이라 함은 주로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조정경기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사업장 생활소음으로 보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업장 생활소음에 대한 측정방법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규제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8>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2-2-8

생활소음규제대상 여부(아파트 내 휘트니스센터)



질의요지

- 아파트 내 주민편의시설(휘트니스센터)이 영리행위를 할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는 생활소음·진동규제 대상을 공장, 공사장 및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 등의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이라 함은 통상 영리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장을 지칭합니다.
- 따라서 귀하가 제기한 아파트 내 휘트니스센터가 「소음·진동관리법」 상 규제대상인지 여부는 시설의 설치목적, 영리행위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2-2-9

생활소음규제대상 여부(유치원)

Q 질의요지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진동 규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에 유치원(비영리 기관이며,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 교부)이 해당되는지 여부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4호의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등록대상에 해당되고 주로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 따라서 비영리 기관인 유치원은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2-10 생활소음규제대상 여부(산단)

Q 질의요지

- 산업단지지역과 인접한 녹지지역에 사는 민원인이 산업단지지역에서 나는 소음으로 인하여 민원을 제기했을 때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1항에 의해 생활소음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지?

A 답변

- 민원인이 어떤 소음을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정공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됐고, 그 공장에 배출시설이 있다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의 적용받아야 하며, 특정공장이 아니라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면 이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1항에 의해 「소음·진동관리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2-2-11 생활소음규제대상 여부(변전소)

Q 질의요지

- 한국전력 소유 변전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 ‘갑’설 :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므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 ‘을’설 :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법적규제 가능

A 답변

- 한국전력은 공익적 성격과 영리적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으므로 ‘을’설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2-12

생활소음 측정 가능 여부 (농지나 과수원에서 일하는 민원인)

Q 질의요지

- 골재 분쇄 사업장(자갈 만드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인근 농지나 과수원에서 일하는 주민이 민원을 제기함. 현재 사업장과 민원지역은 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장 내에는 배출시설은 없음. 돌을 분쇄할 때 나오는 소음과 간헐적인 발파소음이 나고 있으며, 사업장 경계 300m 이내에 다른 주거시설은 없음
- 공정시험방법에는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농지의 경우 부지경계선이 어디이며 어디에서 측정해야하는지?
- 소음측정 후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행정처분은 가능한지?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상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은 주민(실질적으로 거주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자)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시험방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자’에 대해서 주민(실질적으로 거주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자)으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농지나 과수원은 실질적으로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농지나 과수원에서 일하는 주민은 공정시험방법상 ‘피해가 예상되는 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2-2-13

생활소음 측정 가능 여부 (사업장 내 불법점유 민원인)

Q 질의요지

- 골재선별파쇄업 사업장 내 사무실동을 임의로 점유하고 있는 민원인이 사업장을 상대로 소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사업장 내 민원인 거소에서 소음측정을 하여 행정처분 등이 가능한지 여부

A 답변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 ES 03303.1c의 규제 기준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에서는 생활소음의 경우 측정점은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서 측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은 통상 사업장 경계 밖에 위치한 지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민원인 피해 지점이 사업장 경계 내부에 있고, 불법 점유 상태라면 「소음·진동관리법」의 적용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2-14 생활소음 측정 시 사업관계자 입회 여부

Q 질의요지

- 사업장 생활소음 측정 시 반드시 사업장 관계자를 입회시켜 측정을 하여야 하는지요?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을 경우 해당 자료를 가지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요?
- 사업장 관계자가 입회하지 않은 소음측정 결과는 기준이 초과되더라도 행정처분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지요?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규제기준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ES 03303.1)의 5.1.2 관련 질의사항입니다.
 - 해당 규정에서 장애물이란 무엇이며 방음벽의 경우는 장애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요?
 - ‘측정지점에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물로부터 소음원 방향으로 1.0~3.5m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는 내용은 장애물이 있는 경우 소음이 발생되고 있는 골프연습장 방향으로 가서 측정을 해야 한다는 의미인지요?
 - 1.0~3.5m 떨어진 지점이라 함은 소음측정기의 마이크로폰의 위치가 장애물로부터 1.0~3.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해야 한다는 의미인지요?
 - ‘또한, 그 장애물이 방음벽이거나 충분한 차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장애물 밖의 1.0~3.5m 떨어진 지점 중 암영대의 영향이 적은 지점으로 한다’의 내용을 볼 경우 장애물에 방음벽이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해당 내용에 대한 환경부 해석은 무엇인지요?

답변

- 행정관청에서는 사업장 관계자가 입회하지 않아도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측정된 자료는 행정처분 등 조치가 가능함
- 설치된 구조물이 방음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면 방음벽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의거 방음벽 밖(소음원 반대 방향)으로 1.0~3.5m 떨어진 지점(마이크로폰 기준)에서 측정하는 것이 적절함

2-2-15 아파트형 공장 실외기 소음 규제

Q 질의요지

- 지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맞은편에 아파트형 공장건물(지상 17층)이 있고, 각 층에 냉난방을 위해서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음, 실외기는 공장 입점업체 냉난방을 위해서 가동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기계소음으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음
- 에어컨 실외기가 공동이용시설로 이용되기 때문에 규제대상 소음원에 해당하는지, 공용시설을 개별 업체에서 이용하고 있다면 개별사업장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가 가능한지, 관리사무소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다면 사업장으로 분류가 가능한지, 공용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가 가능한지 않다면 생활소음 규제대상으로 규제가 불가능한지 여부 문의

A 답변

- 소음원에 해당하며, 개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도가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개별 사업장에 행정처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여러 개의 사업장 소음이 합성되어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은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사업장에서 미치는 소음정도에 따라 행정지도 등을 통해 방음시설의 설치 및 실외기 설치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다만, 관리사무소에서 다수의 에어컨 실외기 소유주에게서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면,
 - 시설 소유권 및 위탁계약서 등을 고려하여 처분권자가 소음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2-16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장(식당) 실외기 소음 규제대상 여부

Q 질의요지

- 주상복합아파트 건물의 2층 식당에서 외벽에 설치한 냉장고 실외기 소음으로 인하여 3층에 거주하는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였음
- 위 민원의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생활소음으로 규제가 가능한지?
- 규제가 가능할 경우 규제기준치는 사업장 동일 건물과 기타 중 어떤 항목을 적용해야 하는지?

A 답변

- 2층 건물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실외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므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생활소음으로 규제가 가능하며, 규제기준 중 '사업장 기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소음 측정 시에는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 중 생활소음측정방법에 의거하여 측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2-17

동일 건물 사업장(슈퍼) 실외기 소음 규제대상 여부 및 소음도 측정위치

Q 질의요지

- 동일 건물 1층 사업장(슈퍼)의 실외기가 건물외부에 있고 2층 주택에서 실외기 소음민원을 제기하였을 경우 규제가능 여부 및 소음측정지점 문의
 - 갑 : 같은 부지를 사용하는 동일 건물이므로 생활소음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을 : 생활소음규제가 가능하며, 2층 주택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1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은 주로 실외소음을 관리하고 있으며 동일 건물에서 발생하는 실내 소음·진동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의 비고8에 규정된 사업장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상기의 경우 같은 건물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라고 할지라도 실내소음이 아닌 실외소음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을’설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2-18 소음규제기준 초과시 조치사항

Q 질의요지

- 사업장(나이트클럽) 소음규제기준 초과시 조치사항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의 사업장에 대한 생활소음규제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같은 법 제23조 및 제60조에 따라 개선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3 확성기

2-3-1 개별사업장의 옥외스피커 소음 규제

Q 질의요지

- 개별사업장에서 옥외 스피커 사용시 소음 규제 가능 여부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확성기(외부 스피커 포함)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을 운영 중에 있으며, 확성기의 소음이 규제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는 같은 법 제23조 및 제60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합니다.

2-3-2 시위행위로 인한 확성기 사용

Q 질의요지

-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두 집단(A:조합, B:세입자)이 보상문제로 대립 중 B가 확성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권리주장을 하는 반면, A측에서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시정 조치를 구청에 요구
- 상기와 같은 종류의 확성기 소음을 「소음·진동관리법」 상의 생활소음으로 규제해야하는 것인지 문의(확성기를 슈퍼에서 들고 있음)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생활소음(확성기 포함) 규제기준은 사업장, 공사장 등에 적용하는 것으로, 슈퍼에서 확성기를 사용하였으나 사업장의 영업행위를 위한 것이 아닌 일종의 시위(권리주장) 성격의 행위라면 「소음·진동관리법」을 적용하여 규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3-3 목탁소리 규제 관련

Q 질의요지

- 새벽 4시만 되면 굉음을 울리는 목탁소리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음(소음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건지 확인 요망)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은 주로 공장, 공사장, 사업장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대상에 포함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 다만, 종교시설에서 발생하는 확성기소음(스피커 포함)에 대해서는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3-4 확성기소음 기준 및 측정지점

질의요지

- 사업장에서 옥외 스피커 사용시 기준 및 소음 측정지점 문의

답변

- 사업장에서 옥외 확성기(외부 스피커)를 사용하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시행규칙 제20조 <별표8>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따라 소음원인 확성기 소음기준이 적용됩니다.
 - 이때, 측정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에 따르며, 측정지점은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서 측정함을 안내드립니다.

2-3-5 「소음·진동관리법」 규제대상 여부

Q 질의요지

- 체육공원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색소폰에 앰프를 연결하여 연주시 소음규제가능 여부 문의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확성기 소음 규제는 건물의 벽이나 시설물, 지면 등에 고정 설치되어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규제 가능합니다.

2-3-6 후보자 연설 및 홍보를 위한 확성기 사용

Q 질의요지

- 「공직선거법」 제79조에 의한 후보자 연설 및 홍보를 위한 옥외 확성기 사용에 대해 규제가 가능한지?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생활소음 규제대상인 확성기 소음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의해 신고한 확성기 사용은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3-7 확성기 소음 신고 가능 여부

Q 질의요지

- 휴대폰 매장 스피커 소음으로 보행자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소음측정 및 처분이 가능한지?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상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주민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행자의 일시적인 소음피해에 대하여는 적용 할 수 없습니다.

2-3-8 버스킹 소음 규제

Q 질의요지

- 공원, 광장 등 공공장소의 버스킹 공연 소음 규제 가능한지?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확성기 소음 규제는 건물의 벽이나 시설물, 지면 등에 고정 설치되어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규제 가능하며, 공공장소에서 공연시 사용하는 이동식 확성기(스피커)는 생활소음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 공공장소 공연시 사용하는 확성기(스피커) 소음은 위 법 제24조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규제대상에 해당되며,
 - 관할 지자체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이동소음원) 등에 의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음향기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하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21호(인근소란 등)에 따라 규제가 가능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경찰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 집회 확성기 소음 규제

Q 질의요지

- 집회로 인한 확성기 소음 규제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확성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을 규제하고 있으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확성기 소음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2-4 동일 건물 내 소음

2-4-1 동일 건물 내 사업장 소음 규제기준

Q 질의요지

- 동일 건물 내 사업장 소음 규제기준

A 답변

- 동일 건물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비고8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중 ‘사업장-동일 건물’의 기준을 적용하며, 그 외 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장-기타’에 관한 규제기준이 적용됩니다.

*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골프연습장업 및 야구장업,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노래연습장업, 콜라텍업

- 이때 생활소음은 각각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 중 ‘규제기준 중 동일 건물 내 사업장소음 측정방법’, ‘규제기준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합니다.
- 다만, 상가건물 내 사업장 등에 의해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정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4-2 동일 건물 사업장 리모델링 공사 소음 규제기준

Q 질의요지

- 동일 건물 내 상가의 리모델링 소음 규제요청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8>의 비고8 각 호에서 나열한 사업장*은 생활소음 규제기준 중 동일 건물의 규제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체력단력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골프연습장업 및 야구장업,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단란주점 영업, 노래연습장업, 콜라텍업

- 앞서 알려드린 사업장 외 동일 건물 사업장은 생활소음 규제기준 중 ‘사업장 기타’ 항목의 규제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업장이더라도 리모델링 공사인 경우 공사장에 해당되어, 생활소음 규제기준 중 공사장 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소음측정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의 규제기준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2-4-3 동일 건물 소음·진동 규제기준 대상 여부(불링장)

Q 질의요지

- 불링장 동일 건물 내 층간소음에 대한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적용 여부 문의

A 답변

- 불링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별표8〉 비교8호에서 인정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생활소음 규제기준 중 ‘사업장-동일 건물’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사업장-기타’에 관한 규제기준을 적용합니다.

* 체력단력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골프연습장업 및 야구장업,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단란주점 영업, 노래연습장업, 콜라텍업

- 아울러 〈별표8〉의 2호의 생활진동 규제기준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외진동에 대해서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PART
03

교통소음·진동

3-1 도로소음·진동	129
3-2 철도소음·진동	141

3-1 도로소음·진동

3-1-1 방음벽 설치 의무 및 설치 의무자

Q 질의요지

- ○○시~○○시간 고속도로 교통소음(도로)이 환경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방음벽 설치 의무 여부 및 설치의무자 문의

A 답변

- 교통소음규제지역 지정권한은 지자체에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환경기준은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행정 목표치로서 국토개발이나 도시 계획 또는 대규모 건설공사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지표로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별도의 규제기준이 아닙니다.
- 교통소음의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교통기관이 발생시키는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교통소음·진동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소음을 규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교통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의 교통소음·진동의 한도를 초과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시설 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기 고속도로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협의 내용 및 이행 여부는 사업승인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사업승인기관은 사업자의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1-2 사후 환경영향평가 시 기준 법령

Q 질의요지

- 현재 고속도로공사 완료 후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진행중이며, 도로소음과 관련된 기준이 「환경정책기본법」의 기준(주간 : 65dB, 야간 : 55dB)과 「소음·진동관리법」의 기준(주간 : 68dB, 야간 : 58dB)이 있는데 사후영향평가 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

A 답변

- 「환경정책기본법」의 기준은 인간이 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환경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놓은 것임으로 어떤 환경을 조성할 때 참고사항으로 주로 이용되며, 「소음·진동관리법」의 기준은 법적인 제재 조치가 필요할 때 이용됩니다.

3-1-3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방음·방진시설 설치

Q 질의요지

- 「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에서 1항에서는 확실하게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2항에서는 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전 지역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지?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는 제외한다) 중 학교·공동주택, 그 밖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의 시설의 주변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1-4 버스 정류장에 대한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 적용

Q 질의요지

- 버스 정류장에서 발생하는 버스 공회전 소음에 대한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 적용 가능 여부

A 답변

- 정류장(정류시설)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로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을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 아울러,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관리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지역을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더불어,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는 조례를 정하여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의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1-5 이동차량 소음피해 대책

Q 질의요지

- 이동차량에 의한 확성기, 음향기계 등 소음피해에 대한 해결책 문의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지역 등 이동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이동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행상이 사용하는 확성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1-6 이동차량 확성기 소음 관련 처벌 규정

Q 질의요지

- 트럭 등 이동 차량 확성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할 수 있는지?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이동소음의 규제)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 차량 확성기 소음 등 이동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 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0조제3항제5호에서는 “이동소음원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인근소란 등)에서는 “확성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1-7 차량 경적소리 규제방안

Q 질의요지

- 운행중인 차량의 경적소리가 너무 클 경우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경적소음 포함)에 적합하게 운행하여야 하며,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3-1-8 응급차량소음 규제방안

Q 질의요지

- 응급차량소음으로 너무 큰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응급차량 소음법규단속부분에 대한 정확한 법규가 없어 애매모호한 답을 주고 있으므로 법규가 없으면 법 제정을 해주기를 요청

A 답변

- 우리부에서 관장하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제작자동차 및 운행자동차의 배기소음, 경적소음 기준을 규제하고 있으나 긴급자동차의 사이렌음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관장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의 사이렌음의 크기는 자동차의 전방 20미터의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 120데시벨 이하일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1-9 다층건물(아파트) 교통소음 측정방법

Q 질의요지

- 아파트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두 개 층에서 각1세대를 선정하여 교통소음을 측정하고 산술평균값이 기준 초과시 같은 동 전 세대를 초과세대(초과측정치)로 적용가능 여부

A 답변

- 소음·진동의 경우 같은 소음원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위치에 따라 피해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의 관리기준 및 한도의 초과 여부는 피해자의 위치에서 측정하여 초과 여부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며 측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개 지점에서의 측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한도의 초과 여부는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 ES 03304.1c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 측정방법 5.1.1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자(민원인) 각각의 부지 경계선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1.5m 높이에서 주간 시간대 및 야간 시간대별로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시간대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측정지점에서 4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산술평균하여 교통소음한도의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2 철도소음·진동

3-2-1 철도소음 측정지점 및 합성소음 발생시 적용기준

Q 질의요지

- 철도가 교량을 지나갈 경우 측정지점 문의
- 도로소음과 철도소음의 합성소음 발생시 철도교통소음한도 적용가능 여부

A 답변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 ES 03304.2d 철도소음 관리기준 측정방법 5.1.1에 따라 민원발생에 따라 철도소음을 측정할 경우, 철도소음으로 인하여 문제가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로서 지면 위 1.2~1.5m에서 측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철도소음과 도로소음은 그 발생특성이 상이하여 「소음·진동관리법」에서도 각 소음원에 따라 기준을 각각 정하고 있으며,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서도 측정방법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복합소음에 대한 측정기준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각 소음원에 대한 배경소음 및 대상소음을 측정·보정하여 각각의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2-2 정거장의 의미와 교통소음·진동관리기준 적용 여부

Q 질의요지

- 철도 정거장의 범위 및 방음시설 설치 등 교통소음·진동관리기준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에서 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지자체장은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 제2호 비고3에서는 ‘정거장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때 ‘정거장’은 「철도건설규칙」 제2조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의 취급을 위한 철도시설 등을 설치한 장소 및 신호장(열차의 교차 통행 또는 대피를 위하여 철도시설 등이 설치된 장소)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정거장은 철도시설의 일부이나 철도 운행 구간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 법에 따른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 및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측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 이 경우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해당 시설의 특성에 맞게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3-2-3 공동주택 철도소음 측정위치 및 관련 규정

Q 질의요지

- 철도소음은 옥외 측정을 원칙으로 하지만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등으로서 소음도가 더 큰 장소가 있는 경우 소음도가 높은 곳에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의 경우 소음도가 높은 곳에서 측정하여야 하는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의 소음·진동 관리기준 적용시 철도보호지구외 지역에서 측정·평가하여야 하는지?

A 답변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의 ‘철도소음관리기준 측정 방법」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철도소음 기준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며, 철도주변 공동주택의 소음측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의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 아울러,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11>에 따른 교통소음·진동의 관리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철도보호지구 외의 지역에서 측정·평가하여야 합니다.

3-2-4 철도소음한도 측정 방법

Q 질의요지

- 철도소음을 측정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측정하여야 하나요?

A 답변

- 철도소음의 측정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 ‘철도 소음관리기준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야 합니다.
 - 동 규정에 따라 옥외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그 지역의 철도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나 철도소음으로 인하여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의 지면 위 1.2~1.5m 높이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 측정점에 장애물이나 주거, 학교, 병원, 상업 등에 활용되는 건물이 있을 때에는 건축물로부터 철도방향으로 1m 떨어진 지점의 지면 위 1.2~1.5m 높이에서 측정하여야 합니다.

3-2-5 철도소음 측정 시 배경소음 보정

Q 질의요지

- 배경소음이 철도소음 규제기준치를 초과할 정도로 매우 크지만 철도 최고소음과는 10dB(A) 이상 차이가 날 때, 배경소음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하여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철도소음관리기준 측정방법 7.1.2에 따라 측정하면 되는지?

A 답변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중 철도소음관리기준 측정방법 7.1.2에서 “배경소음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란 일반적으로 철도의 최고소음과 배경소음의 차이가 10dB(A) 이하인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배경소음과 철도 최고소음의 차이가 10dB 이하인 경우에 해당 예측식을 적용하여 철도소음을 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철도 최고소음과 배경소음의 차이가 10dB(A)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철도소음한도 측정방법 7.1.1을 적용하여 철도소음도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3-2-6 철도소음·진동 발생 예상지역 피해 방지 대책

Q 질의요지

- 주택단지 인근에 고속철도 증설로 소음, 진동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방음벽 설치 요구

A 답변

- 고속철도 증설에 따라 예상되는 소음, 진동 등 피해 대책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환경부에서는 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소음·진동 관리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동법 규정에 따라 철도소음·진동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철도 등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지정된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내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2-7 철도 선로 장비작업의 교통소음 해당 여부

Q 질의요지

- 철도 선로 장비작업 소음을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

A 답변

- 교통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에 의거 기차, 자동차, 전차 등이 철도·도로를 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음으로써, 선로 장비작업에 의한 소음은 교통소음에 해당하지 않으며, 생활소음으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공사장 소음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PART
04

항공기소음

4-1

공사장 소음측정시 헬기소음 포함 여부

Q 질의요지

- 철탑신축공사현장의 자재 운반시 사용되는 헬기소음의 공사장 소음 포함 여부 문의

A 답변

- 헬기소음의 경우 소음발생특성이 유사한 항공기소음 측정방법(「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ES 03304.4a 항공기소음한도측정방법)에 따라 L_{den} 단위*로 측정하며, 공사장 소음의 경우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ES 03303.1 규제기준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합니다.
 - 상기의 경우 측정지점, 측정방법, 관리기준 및 단위 등이 상이하여 비교가 불가능하며, 헬기소음을 공사장 생활소음규제기준으로 관리하기가 곤란합니다.
 - 다만, 행정지도는 가능하며 소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권한은 관할 지자체장에게 있습니다.
 - 아울러,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조정 또는 피해배상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1월부터 L_{den} 단위로 측정

4-2

악천후 시 항공기소음 측정 처리방법

질의요지

- 항공기소음 측정은 연속 7일간 측정하게 명기되어있으나 우천, 낙뢰 등으로 부득이하게 측정을 못 하였을 경우 처리방법 문의

답변

- 항공기소음 측정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ES 03304.4a 항공기소음한도 측정방법에 따라 연속 7일간 측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당해지역을 통과하는 항공기의 종류, 비행횟수, 비행경로, 비행시각 등이 연간을 통하여 표준적인 조건인 경우 측정일수를 줄일 수 있으나, 이는 해당지역 항공기소음의 대푯값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연속측정이 불가피한 경우 측정불가한 날의 항공기소음과 유사한 날(요일)을 정하여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3

항공기소음 측정방법 및 항공기 종류 관련

Q 질의요지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ES 03304.4a 항공기소음한도 측정방법 '5.3 측정시각 및 기간'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공기의 종류'에 군용기가 포함되는지 여부?

A 답변

- 동 시험기준의 '5.3. 측정시각 및 기간'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공기의 종류'와 관련하여 민간항공기와 군용기는 소음 특성이 다르므로 다른 항공기의 종류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4-4

사업장 내 항공기소음 규제 가능 여부

질의요지

- ○○산업(주)에서 실시하는 정지비행 및 시험비행 시 발생 소음의 규제 가능 여부

답변

- ○○산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엔진테스트 등의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의거 사업장 소음으로서 규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PART
05

행정처분

5-1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명령

Q 질의요지

- “소음·진동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에서 중지기간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 “소음·진동발생 행위의 중지명령”기간 종료 후 소음을 재측정해야 하는지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의 “소음·진동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이란 공사장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말합니다.
- 처분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행정처분기관에서 공사장 특성, 현장여건, 소음피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 중지(금지) 명령은 그자체로 공사업체에 대한 불이익(공기 및 공사비 증가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중지(금지) 기간 종료 시에 규제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소음·진동 측정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5-2

생활소음규제기준 위반시 개선명령 기간

질의요지

-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시 개선기간 문의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규제기준 위반시 개선명령 기간은 따로 규정되어있지 않으며 주민의 피해정도, 개선명령 이행가능 기간 등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관할구청에서 개선명령 및 개선기간을 정함을 알려드립니다.

5-3

민원인이 측정한 소음도로 행정처분 가능 여부

Q 질의요지

- 민원인이 직접 소음측정기를 구하여 측정하고 동영상을 찍어 제출할 경우 동 자료로 행정처분 가능한지 여부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보고와 검사 등)에 의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인 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 또한, 관계 공무원이 해당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해서 배출허용기준과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과 진동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에 대한 근거자료는 관계 공무원이 측정한 자료이어야 하며, 민원인이 소음측정을 하여 제출한 자료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5-4

소음측정대행기관 측정 시 공무원 입회 여부

질의요지

- 소음측정대행기관에서 소음측정 시 공무원 입회 없이 측정한 자료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 가능 여부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보고와 검사 등)에 의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인 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 또한, 관계 공무원이 해당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해서 배출허용기준과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과 진동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에 대한 근거자료는 관계 공무원이 측정한 자료이어야 하며, 해당 관청 공무원 입회 여부와 관계없이 법 제47조제2항의 검사기관이 아닌 소음측정대행기관에서 측정한 자료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5-5

소음측정시 담당공무원 입회

Q 질의요지

- 소음측정은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서만 측정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법 조항 문의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및 제23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등 규정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을 규제하고,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보고와 검사 등)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해서 배출허용기준과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과 진동 검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규제 및 행정처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담당공무원(혹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측정하여야 합니다.

5-6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기간

Q 질의요지

- 생활소음규제기준 위반적발 후 행정처분을 하기 전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기간 부여 여부 문의

A 답변

-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사전통지의 의무를 지거나 같은 조 4항에 따라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사전통지의 생략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음피해정도 및 소음측정 증명자료 여부 등 현장상황에 따라 사전통지 기간의 조정 여부는 처분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 아울러, 사전통지기간 내에도 각각의 생활소음규제기준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7

행정처분 사전통지 기간 중 민원발생시 처분

Q 질의요지

- 1차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기간 중 민원이 있을 경우 소음측정이 가능한지?
- 사전통지기간 중 소음측정결과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행정처분 가능 여부 및 처분시기

A 답변

- 행정처분 사전통지기간 중이라도 특정공사 사전신고내용(작업시간, 건설기계 투입대수 등)을 초과하여 작업하거나, 1차 규제기준 초과 당시와 작업조건 등을 달리하여 1차 측정 시 보다 심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2차 소음측정을 실시하여
- 규제기준 초과 시 다시 1차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1차 행정처분 이행완료 전이라도 신속하게 다시 1차 행정처분을 하여 규제기준 이내로 유지되도록 해야 함.

5-8

‘행정처분은 5일 이내에 명하여야 한다’의 의미

Q

 질의요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 행정처분기준 2.나.참고4. ‘행정처분~위반행위를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명하여야 한다’의 의미
 -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절차 없이 위반행위 확인 후 5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완료해야 하는지?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 행정처분기준 2.나.참고4에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위 조항에 따른 “행정처분”에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예정된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 통지’도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9

행정처분 차수 적용(1)

Q 질의요지

-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을 최초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에 5회 위반시 행정처분기준 문의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1>에서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4차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생활소음규제기준을 1년 이내에 4회 이상 위반행위 시에는 4차 행정처분이 계속해서 부과되며 제60조제2항제2호2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예를 들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1회 초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5회 위반하게 되면 1차 행정처분이 아닌, 4차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5-10 행정처분 차수 적용(2)

Q 질의요지

- 같은 날 생활소음규제기준을 2회 초과시 행정처분 차수

A 답변

-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기준은 시행령 〈별표2〉 1.가 및 시행규칙 〈별표21〉 1.나에 따라 같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날 위반행위에 대한 각각의 처분은 위반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행위주체 및 대상 등을 고려하여 '동일 행위' 해당 여부에 따라 1회 처분 또는 2회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 '동일 행위'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법무부로 문의

5-11 행정처분 차수 적용(3)

Q 질의요지

- 공사에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1, 2차 행정처분을 받고난 후, 1차 행정처분일로부터는 1년이 경과하고 2차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다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는 2차 처분대상인지, 3차 처분대상인지 여부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 제1호나목에 따라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함
- 따라서 1,2차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1차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1년이 경과하고, 2차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는 차수별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여 2차 행정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됨

5-12

시공사 변경에 따른 행정처분 승계 여부

Q 질의요지

- 동일 공사장에서 시공사 변경시 기존 시공사에 처분한 행정처분 사항의 승계 여부는?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같은 법 제23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에 대한 사업자 변경에 따른 승계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또한, 행정처분사항인 ‘소음발생행위의 중지명령’은 소음을 발생시킨 자에게만 미치는 것으로 기존 사업자만이 이행할 수 있는 일신 전속적인 의무에 해당되어 일반적으로 승계가능성이 부인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새로이 도급계약을 받은 시공사는 기존 시공자의 특정공사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므로 변경신고를 통하여 지위를 승계할 수는 없으며, 새로이 특정공사 사전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5-13

배경소음과 측정소음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 여부

Q 질의요지

- 건설현장 공사장에서 배경소음과 측정소음의 차이가 3dB(A) 미만일 경우 행정처분대상 여부 문의
- 배경소음 자체가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측정소음과의 차이에 관계없이 행정처분 대상 여부 문의

A 답변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소음도와 배경소음도의 차가 3dB 미만인 경우 재측정 하여야 하며, 재차 측정 후에도 배경소음도와 측정소음도의 차가 3dB 미만인 경우에는 대상소음의 규제기준 초과 여부를 판별할 수 없어 행정처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음·진동관리법」의 법적기준 준수 여부는 배경소음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측정소음에 보정치를 적용하며, 배경소음이 이미 기준을 초과하고 있더라도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3dB 이상 크다면 규제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5-14 행정처분 명령 위반 시 조치

Q 질의요지

- 사업장에서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여 방음시설 설치 등의 1차 행정처분 후 사업장의 방음시설 설치가 없을 경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 제2호나목2)의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 명령처분의무 문의
 -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 명령시 해당 기계·장비를 사업장에서 사용했다면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명령위반으로 인정가능 여부문의

A 답변

- 생활소음규제기준 위반 시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며 행정처분 기간 동안에는 생활소음규제기준이 준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 만일 행정처분 기간에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2항에 따라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또한, 사용금지명령 기간 중에 규제대상 소음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명령위반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PART
06

층간소음

6-1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

Q 질의요지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

A 답변

- 층간소음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에 지켜야 할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여 입주자와 사용자가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때,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해당되며, 층간소음의 범위는 공동주택 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뛰거나 걷거나 떨어뜨리거나 하는 동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청소기, 세탁기 등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현행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층간소음 기준은 직접충격음의 경우 1분간 등가소음도 주간(06:00~22:00) 39dB(A) 야간(22:00~06:00) 34dB(A)이며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A) 야간 52dB(A)입니다.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의 등가소음도 주간 45dB(A), 야간 40dB(A)입니다.

6-2 층간소음 발생 시 조치방법

Q 질의요지

- 층간소음 피해 발생 시 갈등 조정이나 상담 등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답변

-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는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 및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환경공단(전국, 서울 외) 및 환경보전협회(서울)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1661-2642)’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를 통해 층간소음에 대한 조사·상담 및 측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관리주체 및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통하여 층간소음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044-201-7999) 또는 광역 시·도에 설치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3 층간소음 피해 법적 조치

Q 질의요지

- 층간소음 피해에 대해 법적 조치 방법 문의

A 답변

- 층간소음은 소음발생행위의 확인이 어렵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거의 자유 침해 우려 등의 문제가 있으며, 층간소음의 원인 대부분이 일상생활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이를 「소음·진동관리법」 상의 법적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환경부는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동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중앙(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하시면 조정 등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4

이웃집 에어컨 실외기 소음피해 조치

Q 질의요지

- 공동주택 내 이웃집 에어컨 실외기 소음피해에 대한 층간소음 기준 적용 여부 문의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개인 가정집의 실외기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는 제외됩니다.
- 아울러,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공장·공사장·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실외기 소음은 동법 제20조제3항 <별표8>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개인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실외기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상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참고로 지속적으로 소음 피해를 받는 경우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중앙(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조정 또는 피해배상 등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5

이웃집 화장실 소음 규제 가능 여부

Q 질의요지

- 공동주택 내 이웃집 화장실 사용 소리를 규제할 수 있는지?

A 답변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층간소음의 범위는 공동주택 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뛰거나 걷거나 떨어뜨리거나 하는 동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음향기기·청소기·세탁기 등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기전달소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화장실 급·배수용 배관의 소음방지 설비기준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6

사람 목소리에 대한 층간소음 기준 적용 여부

Q



질의요지

- 인접 세대에서 떠드는 소리에 층간소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A



답변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층간소음의 범위는 공동주택 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뛰거나 걷거나 떨어뜨리거나 하는 동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음향기기·청소기·세탁기 등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기전달소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다만, 대화나 싸우는 소리, 고성방가 등 사람의 육성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지나치게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7

공동주택 공용시설 층간소음 피해 조치

Q 질의요지

- 체육시설 등 공동주택 공용시설에 대한 층간소음 피해 조치방법 문의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층간소음관리 기준은 공동주택 내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에 적용됩니다.
- 관리사무소, 체육시설 등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내 입주자 등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이라면 관리규약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공동주택 내 입주민 등을 위한 시설이 아닌, 관리주체가 개별적인 사업 활동(영리 행위)을 위해 건물 또는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소음을 유발하고 있다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6-8

인테리어 리모델링으로 인한 층간소음 피해 조치

Q



질의요지

- 공동주택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층간소음 피해 조치 방법 문의

A



답변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층간소음의 범위는 공동주택 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뛰거나 걷거나 떨어뜨리거나 하는 동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음향기기·청소기·세탁기 등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기전달소음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 유지를 위해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관리규약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관리주체는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입주민의 권익 침해 및 생활 불편이 과도하지 않도록 관리규약 등을 통하여 적절히 조치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6-9

체육전용시설 용도건물의 층간소음

Q 질의요지

- 체육전용시설 용도건물의 층간소음 기준 적용 가능 여부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른 층간소음 기준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사업장의 경우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규제를 적용받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의 생활소음·진동관리는 건물용도가 아닌 해당 소음원의 종류의 따라 구분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별표8> 비고8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체육도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 등 각목에 해당되는 사업장의 경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PART
07

기타

7-1 군부대 사격소음 관련

Q 질의요지

- 주거지 인근 군부대의 사격소음에 대한 평가기준, 대책 및 유사 사례 여부

A 답변

-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의 관리대상은 주로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과 도로·철도 등의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국가 안보를 위한 시설인 군부대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군부대의 사격소음의 관하여는 군사시설의 환경영향평가 및 사격장 소음피해대책 등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 시설기획환경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2 개 짖는 소리 관련

Q 질의요지

- 민원인 옆집 개 짖는 소리에 대한 규제가능 여부 문의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공장, 건설 공사장, 사업장, 도로, 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동법 제2조(정의)에서는 관리대상이 되는 ‘소음’을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규정하고 있어, 개 짖는 소리를 포함한 동물 울음소리는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육 동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등은 동 법의 관리 및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장, 공사장 등 다른 소음원과는 달리 소음기준 및 직접적인 제재수단 마련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전문가 의견 등에 따르면 반려 동물(개)로부터 지나친 소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 부적절한 사육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의 저감을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에서 소유자의 사육 책임을 강화하여 적절한 사육·관리, 반려견 훈련 등 동물습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물복지 차원의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7-3

공원 내 축구장 공 소리 소음

Q 질의요지

- 주거지 인근 공원 내 축구장 공 소리 등에 의한 소음피해에 대한 조치요청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은 주로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 등에 대하여 적용되며 공공의 생활복지를 위한 공원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자세한 사항은 법률을 관리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관할 지자체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조정 또는 피해배상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7-4 공원 내 농구시설 소음

Q 질의요지

- 빌라 인근 공원 내 농구시설 야간 사용에 따른 소음피해에 대해 빌라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 귀책사유자, 농구시설물 철거요구 가능 여부 및 해결방안 문의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은 주로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 등에 대하여 적용되며 공공의 생활복지를 위한 공원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자세한 사항은 법률을 관리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체육진흥과) 및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분쟁 조정을 신청하시면 조정 또는 피해배상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7-5 정온시설 및 소음규제기준

Q 질의요지

- 정온시설의 법적 정의 문의
- 자연녹지지역의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환경기준의 “가”지역 해당 여부 및 도로소음 환경기준 문의

A 답변

- 정온시설은 통상적으로 정온을 요하는 시설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비고 제6호나목에서는 ‘정온시설’을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 도서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중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보육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은 녹지지역에 포함되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의 “가”지역에 해당할 것이며, 이 경우 “가”지역의 도로변 지역 소음환경기준은 낮(06:00~22:00) 65dB(A), 밤(22:00~06:00) 55dB(A)입니다.

7-6 수상레저활동 소음 조치

Q 질의요지

- 남한강에서 개인이 모터보트 또는 제트스키를 타면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조치요청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은 주로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 공장, 공사장 소음을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의 취미생활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개인의 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법적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다만,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 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동법을 소관하고 있는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조정 또는 피해배상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7-7

지역구분(도로변 지역)

Q 질의요지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소음 환경기준의 지역구분중 '도로변 지역'의 범위는?

A 답변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소음 환경기준의 비교2에서는 '도로란 자동차 (2륜 자동차를 제외한다)가 한 줄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는 데에 필요한 일정폭의 차선이 2개 이상 있는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 ES 03301.1c 환경기준 중 소음측정방법 5.1.1. '도로변 지역의 범위는 도로단으로부터 차선수×10m로 하고,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도로단으로부터 15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8 주차장 경보장치 소음 관련

Q 질의요지

- 민원인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연립주택의 주차시설 출입구에 설치된 경보장치에서 자동차 출입시 발생하는 소음 규제대상 여부

A 답변

- 주차시설 경보장치는 「주차장법(국토교통부 소관)」에서 안전을 위한 설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귀하가 지적한 주차시설 소음피해는 경보장치의 설치목적에 훼손하지 않으면서 소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할구청에도 행정지도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9

기도원 실외기 및 배기후드 소음 처분

Q 질의요지

-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겸 기도원의 실외기와 배기후드 소음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 문의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은 주로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하며 교회와 같은 종교시설은 확성기소음만을 그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어 교회에서 설치한 실외기 소음을 규제하기에 곤란함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분쟁 조정을 신청하시면 조정 또는 피해배상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7-10 사람의 대화소리 규제

Q 질의요지

- 주택가에 위치한 교회의 신도들의 이야기 소리 등 소음에 대한 법적 규제 문의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상의 “소음”이라 함은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정의하고 있으며(법 제2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활동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 이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나열되지 않은 장소인 교회에서 발생하는 사람의 말소리 등은 규제가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7-11 주차장 환기시설 소음

Q 질의요지

- 아파트 지하주차장 환기시설 소음에 대한 조치방안 문의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공장·공사장·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실외기 소음은 동법 제20조제3항 <별표8>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영리목적이 아닌 아파트 주민의 편의를 위한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환기시설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상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내 입주자 등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이라면 관리규약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지속적으로 소음 피해를 받는 경우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조정 등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12 2층 이상 건물의 생활소음 측정위치

Q 질의요지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 ES 03303.1c 규제 기준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 5.1. 측정점과 관련하여 (5.1.3)의 적용은 (5.1.1), (5.1.2)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하는지?
- 상기 기준의 (3)에서 ‘창문·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1m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는 규정이 창문·출입문에서 0.5~1m 이격된 실내에서 측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여부

A 답변

- 상기 시험기준 ES 03303.1c 규제기준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 5.1. 측정점의 규정 (5.1.3)에서는 ‘위 (5.1.1) 및 (5.1.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등으로서 피해가 우려되는 자의 부지경계선에 비하여 소음도가 더 큰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높은 곳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1m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5.1.3)의 적용은 ‘(5.1.1) 및 (5.1.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등으로서 피해가 우려되는 자의 부지경계선에 비하여 소음도가 더 큰 장소가 있는 경우’ 가능할 것이며,
- 측정은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출입문 또는 건물 벽 밖의 0.5~1m 떨어진 지점’에서 하여야 할 것입니다.

7-13 공원 내 편의·운동시설 규제 가능 여부

Q 질의요지

- 공원 내 시설 이용으로 인한 소음에 대해 생활소음 규제기준 적용 가능 여부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8> 생활소음 규제기준에서는 소음발생원(공장·공사장·사업장·확성기 등) 및 대상지역, 시간대로 구분하여 기준치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생활소음 규제기준 중 사업장은 주로 영리 행위를 하는 곳을 의미하며, 영리목적이 아닌 주민의 복지를 위한 시설인 공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사업장 소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공원 내 야외 공연장 등에서 확성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규제기준 중 확성기 소음에 해당하여 규제가 가능합니다.
 - 만약, 확성기를 사용하여 소음을 유발하고 있다면, 소음의 측정은 「소음·진동공정 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에 따라 피해자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함을 안내드립니다.

7-14 교회 놀이터 소음 규제

Q 질의요지

- 집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만든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시끄러운데, 교회 관계자 및 아이들 부모와 얘기해도 시정이 안 되므로, 법 개정 등 이에 대한 조치를 요함

A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상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하므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는 동법 상의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의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 제1조제26호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7-15 용도지역이 혼재된 경우 기준

Q 질의요지

- 민원인이 거주하는 건물이 2개의 용도지역이 혼재된 경우 생활소음 규제기준 적용 대상지역은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A 답변

- 하나의 건물에 2개의 용도지역이 혼재하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소음기가 설치된 측정지점)의 용도지역을 생활소음규제기준 대상지역으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소음·진동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발행일 2023년 2월

발행처 환경부

편 집 환경부 환경보건국 생활환경과

인 쇄 대양인쇄

〈비매품〉

